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하며,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추진을 위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국가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심의하며 그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함

나.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등과 국내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등을 그 위원으로 함.

다.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설치(안 제8조)

- 1)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의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총괄기획위원회를 둠
- 2) 분과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국민정책참여단의 설치(안 제9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업무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 수렴과 정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정책참여단을 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하며,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국가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탄소중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국가전략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탄소중립 이행목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과 관련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과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목표 관리, 이행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
9. 탄소중립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탄소중립을 위하여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9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 외교부장관
5. 행정안전부장관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9. 보건복지부장관
10. 환경부장관
11. 여성가족부장관
12. 고용노동부장관
13. 국토교통부장관
14. 해양수산부장관
1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7. 금융위원회위원장

18. 국무조정실장

19. 국내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항제19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
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
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총괄기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총괄기획위원
회의 위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
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민정책참여단)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 정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민정책참여단을 둔다.

제10조(사무기구 등)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국무조정실의 국무2차장으로 한다.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단체·연구소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요원, 운전요원 등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또는 방송토론 등을 실시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 협의체, 자문단, 사무기구 및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국민정책참여단, 사무기구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연 락 처	(044) 200 - 2882